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13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3월 10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비용추계서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는 150원 ⇒ 250원(인상)
- 전자고지 & 자동이체는 500원 ⇒ 600원(인상)

○ 산출기준

- 고지건수 : 2021년 기준 세액공제 건수 기준
- 연도별 세액공제 고지건수 증가비율 : 매년 25% 증가 가정

(단위: 천건, 백만원, %)

구분	평균	'22	'23	'24	'25	'26
건수	6,963	4,242	5,303	6,629	8,286	10,358
증감액	696	424	530	663	829	1,036
증감율	25	25	25	25	25	25

-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감소(세액공제)

다. 입법예고(2022. 1. 27 ~ 2. 1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정기분 세목(시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전자송달, 자동이체 250원 ~ 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 ~ 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1.1. 시행)

※ 본 세액공제 제도는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 납부로 절감되는 징세비용(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 신장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개정 법(제92조2제1항1))에서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이하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을 신청할 경우와, 두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로 나누어 고지서 건당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종전 대비 약 60% 인상)하여 규정하고, 실제 세액공제액의 수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 ③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92의2) >

종 전		개 정	
구분	세액공제 금액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 ~ 500원	전자송달	250원 ~ 800원
자동이체	150원 ~ 500원	자동이체	250원 ~ 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 ~ 1,0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500원 ~ 1,600원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안 제16조제1항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경우 장당 세액공제액을 250원으로 인상(현행 150원)으로 하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으로 인상(현행 500원)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구분	세액공제 금액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	전자송달	250원
자동이체	150원	자동이체	25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5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600원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 ----- ----- ----- <u>250원</u>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 ② (생략)	2. ----- ----- ----- <u>600원</u> ② (현행과 같음)
--	--

※ 지방세 감면은 조문별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본 조례상 본 세액공제액은 2011년도에 규정(2011.7.28. 개정, 시행)되어 10여년간 적용되어 온 금액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인상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 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세액공제액 허용범위*에 비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세액공제액 수준**은 법정 범위의 하한으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 전자송달, 자동이체 250원~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1,600원(상한 기준 종전 대비 60% 인상)

** 조례: 전자송달, 자동이체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현행 대비 51.5% 인상)

※ 실제 2021년도 세액공제 실적(339만건, 6억 6,465만원)에 인상(안) 공제액을 적용할 경우, 당초 대비 339백만원(51.5%)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10억 4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 세액공제액 개정 효과(‘21년 신청건수 기준)> (단위 : 건/원)

구분	현행		개정		차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금액(C) B-A	증가율 C/A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등 납부	2,949,723	442,458,450	2,949,723	737,430,750	294,972,300	66.7%
전자송달&자동이체 등 납부	444,389	222,194,500	444,389	266,633,400	44,438,900	20.0%
합 계	3,394,112	664,652,950	3,394,112	1,004,064,150	339,411,200	51.1%

- 한편, 재무국에서는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별첨)에 따라 ‘전자납세자’에게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지방세 고지 건당 마일리지를 적립(현행 350원~850원)해 주는 ‘전자 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2007. 7. 30., 제정, 시행).

※ 2021년 정기분 고지 17,126천건 중 전자고지 건수 3,394천건(19.8%)

< 본 조례상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마일리지 적립액	1,244	1,005	717	670	550	399

- 이는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라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범상 세액공제 제도와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상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범상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규모를 서로 조율해야 하는 등 이중적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비교표(개정안 기준) > (단위: 원)

신청구분	세액 공제액	마일리지 적립		합계	공제범위 (법)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송달 납부신청	250	350	850	30만원 미만 : 600 30만원 이상 : 1,100	250~800
자동이체 납부신청	250	0	0	250	250~800
전자송달 & 자동이체	600	500		1,100	500~1,600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상 ‘전자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합계(1,100원)가 법정 세액공제범위(800원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을 반영한 2022년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추계액(전수 25% 증가 반영, 1,225백만원)과,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1,647백만원)의 합계액(2,902백만원) 규모는, 이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액(3,614백만원)의 80.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로 인한 예산 절감액 추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절감액 (A-B-C)	세수증가 요소	세수감소 요소	
		징세비용절감액(A) (고지서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	세액공제(B)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감면조례	마일리지 적립(C)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건수	-	4,242,640	4,242,640	3,427,616
금액	711,954	3,613,648	1,255,080*	1,646,614
건당평균(원)	168	852	296	480

* '21년 실적에 본 조례 개정(안)의 공제액 인상 효과와 건수 25% 증가 예상 반영

※ 마일리지 적립대상은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도 포함됨.

※ 마일리지는 개인납세자에만 적립되고 자동이체만 하는 경우는 적립되지 않음.

※ 평균값 : 항목별 개별 산출(법인/개인, 일반/등기 등 사유)

※ 징세비용 : 고지서 제작(건당 54.24원)+우편요금(건당 일반 350원, 등기 2,450원 적용)

- 한편, 마일리지 적립 제도*(2007. 7. 30., 제정, 시행)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법에 본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 운영하여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중적으로 운영되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2007. 7. 30., 제정,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10.개정, 2011.1.1.시행

※ 부산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법상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규 적립 없이 기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될 때까지만 존치(<https://etax.busan.go.kr/>).

-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 두 제도의 통일된 운영을 위하여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법정 제도인 세액공제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 이에 대하여 재무국은 현행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본 세액공제 제도로 흡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납세편의 증진과 징수비용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자송달 등에 따른 납부 활성화 유인책으로서의 효과적인 세액공제 규모 산정을 위한 재무국의 종합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를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2022.1.1.)과 본 조례(안) 공포까지 약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 따른 세액공제는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는바, 금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포일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 정기분 세목(시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이외 부칙 제2조에서는 새로 규정된 세액공제 확대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건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 부칙 제3조는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 시행 이전에 성립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확인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발)

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3조(지원)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세 등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④ (이하 생략)